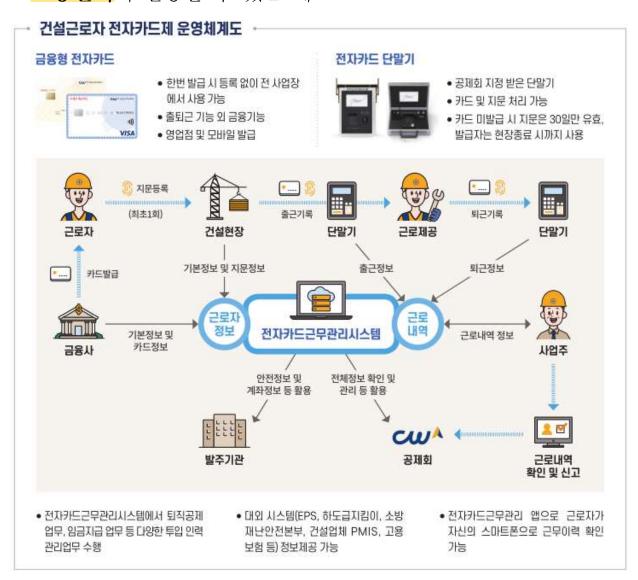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2단계 확대 시행 안내 자료

'22년 7월 1일부터 공공 50억, 민간 100억 이상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확대 시행됩니다!

## 1 전자카드제 개요

- 건설근로자가 발급받은 전자카드를 전자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 이를 기반으로 건설사업주는 <mark>건설근로자의 소속·직종, 출퇴근 내역 등을</mark>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 및 임금지급 등 건설근로자 고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2 주요내용

## □ 전자카드제 대상

- <mark>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mark>인 건설공사 중 <mark>단계별 시행일 이후</mark> 입찰공고한 공사 대상이며,
  - <mark>발주기관</mark>은 입찰공고 등록 이전 전자카드제 적용 여부 확인 후 대상일 경우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문구를 입찰공고문 상 기재해야 함\*
  - \* 입찰공고문 작성 예시 붙임 참고

#### < 공사예정금액별 전자카드제 적용 구분 >

구분	1단계 시행 ('20년 11월 27일 이후)	2단계 시행 ('22년 7월 1일 이후)	3단계 시행 ('24년 1월 1일 이후)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함

### □ 전자카드제 대상 건설공사 사업주 의무사항

-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 <mark>건설사업주</mark>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mark>전자카드를 발급</mark>해야 하며,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함
  -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상품명 :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 --
  - 「금융실명법」을 적용받는 금융형 카드로써, 건설근로자의 정확한 개인정보 파악 및 양도·매매 등 부정 사용 방지가 가능하며, 출퇴근 기록 외에도 결제 기능, 캐시백·적립 등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
  -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가까운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 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 ※ 신용불량자와 외국인도 문제없이 모두 발급가능 (단, 비대면 발급은 일부 제한)



-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운영(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3항)
-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의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 ·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 드는 비용**에서 정산 가능(직접노무비의 2.3%)



※ '22.6 현재 총 6개 업체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정업체별 단말기 종류 및 가격, 설치 문의는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ecard.cw.or.kr) 참고

## 3 발주기관 역할

< 시점별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발주기관 주요 역할 >

시점	입찰공고 시점	공사 착공 시점		공사 시공 시점		공사 준공 시점
주요 내용	■ 압찰공고문 내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퇴 직 공 제 가입에 드는 금액 내 전자 카드 단말기 설치·운 영 비용 포함	■ 사업장 개설과 동시에 전자 카드 단말기 설치 지도 ■ 근로자 사업장 투입 시 전자 카드 발급 여부 팔수 확인 지도	⇒	■사업장 내 근로자 전자 카드 발급 및 사용 지도 ■미발급 근로자 전 자 카 드 발급 방법 안내 및 사업주 교육 실시	⇒	■ 퇴 직 공 제 가입에 드는 금액 정산시 전 자 카 드 단말기 설치 운영 비용 포함 정산
관계 법령	건설근로자법 제10조	건설근로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근로자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건설근로자법 사행령제10조의2

## 붙임

## 발주기관별 입찰공고문 등 전자카드제 관련 내용 반영 현황

### □ 조달청

O 입찰공고문

공사 입찰공고

인천지방조달청 시설공고 제〇〇〇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1. 8.

인천지방조달청 시설공사계약관

2. 입찰 및 계약방식

: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O 입찰공고문

## (긴급) 궁 사 전 자 입 찰 궁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사항

공고 번호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개요	추정가격(원)
000	000	000	000	000

- ※ 공사기간은 정리기간·식재유지관리 공사기간 미포함 및 착공시기에 따른 공사기간 증 감(기후여건 등을 고려한 비작업일수에 대해 지역별, 시기별 차이 반영) 가능
- ※ 기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15. 입찰유의사항

가~사. (중략)

아. 낙찰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확대 시행(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O 착공업무지침

[별표 5]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4.2.4 관련)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5. 노임지급 연계관리

「(하)수급인 근로자 노무비 청구 및 전회지급 총괄표」 제출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출역인원과 노무비 청구인원을 비교하여 누락여부를 확인후 노무비 청구하여야 하며, 출역인원에 대한 노무비 지급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O 공사관리지침

#### 12.1.3. 하도급 통보

- 라. 하수급인 면담
- 5) 하수급인과 면담시 고지사항
- 다) 공사대금, 노무비의 청구 및 지급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 \*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근로계약서, 개별 근로자 성명, 지급액, 연락처 등)을 수급인에게 매월 통보
  - \*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 적용현장은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 \* 하수급인의 의무
- 1. 건설 근로자 관리
  - <u>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 현장인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출역현</u> 황을 관리

#### 12.4.3. 노무비 지급 관리

- 가. 노무비 청구
- 3) 수급인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의 노무비청구 시 <mark>건설근로자의 출역현황(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적용현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출역내역,</mark> 미적용 현장은 수기 출역 내역)과 <u>비교하여</u> 노무비의 청구누락, 과다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출역현황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 □ 한국도로공사

O 입찰공고문

## 공사입찰공고

1~20. (중략)

21. 기타 사항

. . .

- 21.3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21.3.1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 인천국제공항공사

### O 입찰공고문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000

나.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

다.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라. 사업내용(요약, 공사 상세내용은 반드시 붙임 시방서 확인)

- 000

마.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입찰대상금액	지급자재비*	추정금액
000	000	000	000	000

#### 2. 입찰 일반사항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 인천광역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입니다.
-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공사입니다.
-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 □ 한국가스공사

O 입찰공고문

## 공사입찰공고 (2차정정, 긴급)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규모	추정가격 (VAT별도)	공사기간
000	000	000	계약일 ~ '23.04.30

#### (중략)

#### 13. 기 타

13.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전자카드제</u>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